

정보원의 비익과 그 법적보호

이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정보원 익의 문제

1964년 M. McLuhan 이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라는 그의 저서에서 앞으로 전자매체를 주축으로 하는 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한 이래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Trist 는 정보사회의 도내와 인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1)

첫째, 앞으로 문화가치는 자아통제 독립성 · 자아실현 · 상호의존성 · 쾌락추구으로 변동될 것이다. 둘째,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이 특히 강조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심리적 욕구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속에서의 개개인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을 중요시하게 된다.

모든 개인은 주체성을 지향하는 자립형 인간으로 변질되어 정보이용의 능력이 확대됨으로써 출세, 긴장, 자기통제의 산업형 인간상에서 성장, 창조, 성취, 참여, 봉사하는 인간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Y. Masuda 는 「정보화사회」(The Information Society)라는 저서에서 컴퓨터나 통신 등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치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화사회에서는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의 형태보다 국민이 중앙정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가 지배적인 정치체계가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첫째, 주민의 소리를 듣는 여론조사가 용이하다는 점, 둘째, 전자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용이하게 된다는 점, 셋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지게 됨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여론형성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된다는 점, 넷째, 뉴미디어의 도입으로 정책입안과 정치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매스 미디어가 대형화 · 독점화됨에 따라 일반국민은 미디어로부터 소외 당하게 되고, 특히 현대의 대중국가에 있어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분리현상이 현저하게 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듣는 자」의 자유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알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3)

알 권리(Right to Know)라 함은 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취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한 알 권리는 민주주의적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민주국가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여론이 없으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없으면 책임 있는 여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의 유통 과정을 보면 정보원으로부터 각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수집 그것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쳐 그 처리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전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원은 정보의 원천으로서 정보자료의 출처로서 정보의 유통과 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서 그 정보원의 비익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원의 비익 내지 취재원에 관한 진술거부권에 관해서는 그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보원이익설, 보도자이익설과 공공적 이익설이 대립되고 있다. 오늘날의 다수설은 어떤 하나의 학설만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주로 하고 동시에 부수적으로 보도원의 이익과 정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 절애설을 취하고 있다.

II. 정보원비익의 법적 보호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취재에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정보원의 비익이라는 기자의 윤리가 존중되고, 사회도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확실히 그것이 정확한 보도의 조건이기 때문인 것이다.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도기관의 취재원비익권의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조치에 의해서 취재원비익권을 확립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는 곳에서는 이론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는 법률가의 반론도 있으며, 또한 언론계에서도 이 특권의 대상으로서 특권을 지닌 기자의 자격을 국가권력이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법적으로는 기자에게 증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상 정보원에 관해서는 그 개시를 강제하지 않는 관행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보기관의 정보원의 비익권이 잘 확립된 미국과 독일의 판례·법제를 검토하여 본 다음 우리나라의 취재원보호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에 있어서의 정보원비익권

미국에 있어서는 최근 기자의 취재원공개거부가 법정모욕죄를 구성하여 기자 또는 편집인의구속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4) 언론인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것은 사실이나, 기자의 증언거부권에는 이를 간단하게 인정해 버릴 수 없는 상반되는 심각한 반대이익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즉 형사피고인 또는 억울한 피해자의 권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일반국민의 증언 의무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인들은 일반국민의 증언의무의

사회적 이익의 중요성을 정하지는 아니하나, 그들은 기자가 증언할 강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적절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기자가 결정적으로 중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익명의 정보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미국에서는 기자의 취재활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우월적 가치에 이바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기자와 제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민주정치에 요청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견지에서 기자의 증언의무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로서 다음의 사항을 예시할 수 있다. 5)

(1) Common Law 상의 권리

Common Law 는 부부 사이 ·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 의사와 환이자 · 성직자와 고해자 등과 같은 특수한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며, 이러한 관계를 privileged communication 이라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주가 제정법으로서 이러한 특수관계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6)

한편 이러한 privileged communication 은 기자가 요구하는 증언거부권과는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자에 있어서의 특권은 환자 · 고해자 · 소송의뢰인에게 있고 이들의 신원은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으며, 다만 문제는 그 communication 의 내용이다. 그러나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있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은 장막에 싸인 제 3 자로서의 제보자이며, 또한 보도되지 아니한 미발표의 정보의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기자의 증언거부권이 Common Law 에 의하여 인정되기 곤란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7)

(2) 헌법상의 근거

미연방헌법 수정 제 1 조는 출판의 자유(Freedom of Pres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좁은 의미로 보면 출판하는 권리 이상의 것은 보장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헌법 수정 제 1 조는, 출판하는 권리, 자유로이 배포하는 권리, 정부를 비판하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8) 그러나 기자의 증언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아직도 그 노력은 계속 중이라 할 것이다.

우선 이 권리가 헌법상의 그것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수정 제 1 조의 권리로 확립되어야 하는 바, 이 권리는 로드 아일랜드의 어느 연방지방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나 9) 그러나 취재의 권리의 인정이 곧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니었다. 그 후 수정 제 1 조야말로 기자들을 비밀의 취재원의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10) 이러한 경우 법원은 두 개의 상반하는 이익 즉 사법권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증언의무와 수정 제 1 조에 근거한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과 대립시켰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은 불가피한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므로 수정 제 1 조에 대한 약간의 침해는 정당화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 이후 극히 최근에 와서 비로소 기자들은 증언거부권을 얻는데 제한적으로나마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1970 년대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브란츠버그의 원칙 (Branzburg ruling)」 이다.

이 원칙은 하급심을 거쳐 상소된 비슷한 세가지 사건을 병합 심리한 연방대법원의 결론이었으며 11)그 요지는 기자는 일반적으로 대계심원에 출두하여 범죄조사에 관계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기자라고 하여 보통의 시민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한정된 특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언론자유를 위하여 불리하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브란츠버그 원칙의 확립 이후에도 하급법원의 여러 판례에서는 그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일치하고 있음은 기자의 특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뒤에도 그 헌법상 지위는 분명히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제정법상의 근거

기자의 증언거부에 관한 헌법상의 특권은 신문이 의지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입법에 의하여 기자의 보호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1896년 메릴랜드 주가 법정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한정된 특권을 언론인에게 부여한 이래, 그 후 미국의 각 주에서는 이른바 「보호법」 (Shield Law)을 제정하여 언론인을 비밀의 취재원의 공개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정법을 갖춘 주는 현재 26개 주에 이르고 있다.

12)

그러나 이 보호법은 각 주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거의 절대적 특권을 보호하는 주법도 있는 반면 어떤 주의 법은 증언거부권의 제한이 지나쳐 그 법의 존재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불필요한 소환장의 발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보호법의 주 상호간의 불일치 · 보호법제정에 대한 무성의 · 개념정립의 곤란성 · 예외규정의 함정 · 법원의 축소해석 등 많은 문제점들이 13)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연방법무성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소만상 발부지침

이상과 같이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은 Common Law, 헌법 및 각주법에 의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1970년 8월 10일 연방경사가 기자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하였다. 14) 그 지침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신문과 연방정부와의 마찰이 경감되고 신문의 자유와 사법권의 공정한 집행을 보호하고 양자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지침은 다수의 주에서도 지방검사가 그 지역 내에 있어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데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도 법무장관에 의하여 언제 없어질지 모르며, 1960년대와 같은 사회불안이 오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기자란 누구냐 라는 용어정의상의 문제도 있다. 또한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되고 민사소 입법조사 · 행정조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2. 서독에 있어서의 취재원 비닉권

서독에 있어서의 취재원 비닉권 보호를 위한 언론의 특권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독의 신문평의회는

1957년 이래 언론인의 증언거부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를 거듭하였으며, 특히 1964년 10월 2일에는 「기본법 제 5 조는 언론의 공공적 사명을 중시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지지하여 왔다. 정보의 자유 없이는 언론의 자유도 없으며, 또한 증언거부권 즉, 취재원을 비밀에 부치는 권리 없이는 정보의 자유란 없는 것이다」 라는 결의를 선포하는 등 끊임없이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한편 종래 기자의 증언거부권 문제에 관하여 서독의 법적 규정 (민사소송법 제 383 조·형사소송법 제 53 조)15)은 합리적이지 못하였다. 즉 그것은 공표된 정보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거나 또는 편집자가 그 정보의 공표를 이유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공표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편집자 자신이 처벌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취재원을 밝혀야 하고, 또 공표된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할 수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이에 Bayern 주는 이미 1949년, Hessen 주는 1958년 출판법에 각각 취재의 자유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었고, 그 후 1963년부터 1966년에 걸쳐 다른 주에서도 출판법 개정시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확대시키는 여러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1973년 11월 28일 연방헌법재판소가 Hessen 주의 출판법과 관련, 기자의 증언거부권은 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기본법 제 74 조 제 1 호에 의해 연방이 그 입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출판법의 당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이래,16) 관련법의 통합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마침내 1975년 6월 19일 「출판·방송 종사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 「출판·방송종사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

① 증언거부권

동 법률 제 53 조 제 1 항에서는 정기적인 출판물이나 방송이 준비, 제작, 전파에 직업적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증언이나 증거물의 제시를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적이라 함은 주요 업무 또는 부차적 업무로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유상, 무상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기적이 아닌 출판물의 준비, 제작,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i) 편집 면에의 기고 및 기사소재의 필자, 기고자 또는 증인의 신원, ii) 전술한 사람들이 출판물의 기사와 관련해서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다. 또한 기사화되지 않은 정보의 내용도 보호된다. 즉, 반드시 출판이나 방송된 기사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위해 수집되었거나 소유하고 있는 정보도 보호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언거부권은 정보의 제공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정보내용의 공개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언거부권은 광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압수·환색의 금지동 법률은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할만한 자료를 수사당국이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압수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문서, 녹음물, 필름, 데이터, 복사본, 기타 기사물이며, 이러한 자료를 전술한 출판·방송종사자가 가지고 있거나, 편집국·출판사·인쇄소·방송국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압수·수색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이 자료압수금지에 있어서는 그 예외규정이 있는데 i) 전술한 출판·방송종사자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비호·인멸하는 경우 또는 장물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ii) 당해 자료가 범죄행위에 의해 제작되거나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압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편집국, 출판사, 인쇄소, 방송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법관의 명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로써 압수가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이 법관에 의한 압수명령도 당해 자료가 증거거부권이 인정된 자의 사택 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행할 수가 없다.

(2) 동 법률의 문제점

이 법률에 의하여 서독언론은 거의 무제한의증언거부권을 보장 받게 되었으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증거거부권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79년초 신문평의회가 증거거부권 개정안을 통하여 언론계가 지적하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었다.

첫째, 증거거부권의 대상을 출판, 방송사업의 「직업적」인 종사자에게만 한정시킨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본법 제 5 조가 언론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의 협력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영화 및 비정기적인 보도도 기본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증거의 압수를 인정함은 증거거부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또한 신문평의회는 동 법률의 제정이전에 광고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증거거부권의 보호영역 속에 광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보호법규상의 문제는 서독도 앞서 검토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영역 및 해석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취재원비익권

종래의 「언론기본법」에서는 그 제 8 조에서 취재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서는 언론기본법의 그 규정이 지나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관련조항을 전부 삭제하였다.

주)

1) Eric Trist, "Toward a post-Industrial culture" in Robert Dubin(ed.), Handbook of work, Organization and Society, Chicago : Rord McNally, 1976, pp. 1011~1016

2) Y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as post-Industrial Society, Tokyo; Institut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pp.101-103.

3) 이 점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서원자·이강혁 공저공법학연습 234면 이하 참조바람.

4) 그 이유로서는 ① 민권운동·반전운동·마약문제기타 과격파의 행동으로 정부의 비밀조사가 증대된 점 ② 기자는 수사기관원 보다는 쉽게 과격파의 지도자들과 접근할 수

이므로 정부는 수사상 기자의 협조를 요구하게 된 점 ③ 신문이 지금까지 누려온 방관자의 역할에서 참고자로 변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Don R. Pember, Mass Media Law, Wm.C. Brown Company Publishers, 1977, p.291.

5) 자세한 것은 변재옥, 「현대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II)」, 사회과학 I (영남대), 1982, 64 면 이하.

6) 예컨대 New Jersey 주의 5131. Ann. §§2A : 84A -20, -22, -23(1976) 등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법은 근친자의 증언거부권(제 148 조)과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 149 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근친자(제 285 조) 및 업무상의 증언거부권(제 286 조)을 규정하고 있다.

7) Pember, op.cit., p.294.

8) Pember, op.cit., p.295.

9) Province Journal Co. et al. v. McCoy et. al., 94 F. Supp. 186(D.C.R.1, 1950).

10) 예컨대 Murphy v. Colorado, 365 U.S 843(1961), In re Good father's Appeal, 45 Hawaii 317, 367. p.20. 472(1961); In re Taylor, 412 Pa, 32,193 A. 20. 181(1963).

11) 그 세가지 사건은 ① Branzburg v. POUND, 461 S.W 2d 345, 347-8(Ky. 1971). ② In re Papas, 358 Mass. 604, 266 N .E.20.297(1971)③ Caldwellv.U.S.,434 F. 20.1081(9th Cir1970). 등이다. 사건개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변재옥, 전제논문 66 면-70 면 참조.

12) D.M. Gillmor & J.A. Barren, Mass Communication Law, 3rd ed., West, p. 364(1979).

13) 이 문제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변재옥, 전제논문, 74 면이하 참조.

14)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for Subpoenas to the News Media, August 10, 1970.

이 지침의 주요부분을 요약하면,

1. 소환장발부 전에 기자와 사전협상을 할 것.

2. 협상에 실패하면 법무장관은 다음 지침에 따라 소환장발부에 찬성할 것

① 법무성은 기자를 범죄수사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② 기자가 가진 정보는 수사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어야 한다.

③ 기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야 한다.

④ 소환장은 특정한 정보를 위하여 발부되어야 한다.

15) 형사소송법 제 383 조 제 1 항 제 5 호 「직무직업상, 그 자체의 성질 또는 법적 규정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사실을 고백받은 자는 이 사실에 관해서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 53 조 제 1 항 제 5 호 「편집이자, 발행인, 출판인, 인쇄인 기타 정기적인 인쇄물의 제작, 발행에 종사하는 자는…… 증언거부권을 가진다」

16) 상세한 것은 광문영언, 「발효된 증언거부권」, 신문연구(일본신문협회), 1975 년, 60 면이하.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법학박사)

저술, 「헌법의 기본권리」 「헌법」, 「공법학 연습」 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장